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98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7.

발 의 자: 김선교・이철규・이종배

성일종 • 안병길 • 구자근

정진석 · 김예지 · 김석기

정운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산불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산불진화 장비 중 산불진화 헬리콥터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산림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음.

이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(안 제33조제3항 단서 및 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산불의 예방 등) ①・②	제33조(산불의 예방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	③
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	
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	
인력,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	
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후	
<u>단 신설></u>	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
	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
	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
	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
	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
	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
	령으로 정한다.